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22일, 김문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3차 전체회의(2025.9.23.)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 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 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7년부터 '19년까지 소폭 발생 건수가 증가하다가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전년도 14만 9천건 대비 4만 4천건이 증가한 19만 3천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단위: 천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	117	123	139	42	93	149	193

(자료: 교육부)

2023년도 기준 구체적인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사고장소별로 살펴보면, 총 19만 3,177건 중 부속시설 사고가 70,988건(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동장, 교실, 통로, 교외(활동) 순이었으며, 학교 밖 교외(활동)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4,230건 증가한 10,084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학교 안전사고 현황(사고장소별)>

연도	부속시설*	운동장	교실	통로	교외(활동)	합계
2023	70,988 (36.7%)	55,415 (28.7%)	30,877 (16.0%)	25,813 (13.4%)	10,084 (5.2%)	193,177 (100.0%)
2022	47,409 (31.7%)	53,419 (35.8%)	23,072 (15.4%)	19,585 (13.1%)	5,854 (3.9%)	149,339 (100.0%)
2021	33,548 (36.0%)	29,043 (31.2%)	15,401 (16.5%)	12,144 (13.0%)	3,011 (3.2%)	93,147 (100.0%)
2020	13,833 (33.0%)	12,541 (29.9%)	8,401 (20.0%)	5,607 (13.4%)	1,558 (3.7%)	41,940 (100.0%)
2019	37,271 (26.9%)	50,653 (36.5%)	24,434 (17.6%)	20,692 (14.9%)	5,734 (4.1%)	138,784 (100.0%)
2018	32,879 (26.8%)	43,466 (35.5%)	22,040 (18.0%)	18,660 (15.2%)	5,525 (4.5%)	122,570 (100.0%)
2017	27,923 (23.9%)	44,943 (38.5%)	20,438 (17.5%)	17,701 (15.2%)	5,679 (4.9%)	116,684 (100.0%)

*부속시설: 강당(체육관), 교무실 등 관리·행정공간, 화장실, 급식실, 기숙사 등 포함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교장 및 교원에게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교원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교원등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근거를 마련 하고(제10조제5항)¹⁾²⁾,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제10조의4)³⁾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교직원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안전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법률에 새로이 근거가 마련된 ‘보조인력’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⁴⁾임에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한다.

[시행일: 2025. 6. 21.]

2)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5. 6. 21.]

4)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각급학교에서 학교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채용 또는 활용하고 있는바, 시·도교육청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응급구조사 등 안전관련 자격소지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 중에 있음.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하여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보조인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안전관련 중요한 인력인바, 보조인력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조인력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은 면책이 되는 기준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⁵⁾로 명확화하고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실관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붙임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수정안 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

[붙임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의결일을 기준으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이 도과하였는바 시행일을
“2025년 6월 2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부칙 중 “2025년 6월 2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법은 <u>2025년 6월 21일부터</u> <u>시행한다.</u>	----- <u>공포한 날</u>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략)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학교장 및 교직원</u> 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u>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 4에 따른 보조인력</u> 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u>학생에 대하여</u> ----- ----- ----- -----.